

등록번호	관광과-15761
등록일자	2025. 7. 2.
결재일자	2025. 7. 2.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관광진흥팀장	관광과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부시장	시장
					2025. 7. 2.
이경신	최광용	장은옥	김구연	장진원	김동일
협조	정책기획팀장	최용선			



2025년('24년 실적)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결과보고

BORYEONG

개요

- (평가기간) 2025. 4. ~ 6.
- (평가범위) 2024년 재단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 (평가결과) 재단 경영평가 '나'등급 / 대표이사 성과평가 'A'등급
 ※ 전년 : 경영평가 '나'등급 / 대표이사 성과평가 'A'등급
- (조치사항) 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보령시
(관광과)

- 2025년('24년 실적) (재)보령축제관광재단 -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결과 보고

◇ 보령축제관광재단의 '25년('24년 실적)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연봉 조정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재단 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대표이사 성과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 제25조

II 평가 개요

- (평가기간) 2025. 4. 8. ~ 6. 13.
- (평가대상) 2024년 재단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실적
- (평가활용) 연봉조정 및 성과급 지급(대표이사), 성과급 지급(국장 및 직원)
- (평가기관) (주)웨슬리퀘스트(대표 정종섭)
- (평가등급) 5등급 구분평가

◎ 재 단 경영평가

평가 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가 점수	95점 이상	85점 이상	75점 이상	65점 이상	65점 미만

◎ 대표이사 성과평가

평가 등급	S	A	B	C	F
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III

평가 결과

○ (총괄)

구분	2024년('23년 실적)		2025년('24년 실적)		비고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재단(기관)	85.01	나	85.21	나	
대표이사	89.91	A(우수)	87.88	A(우수)	

○ (기관 경영평가)

- 평가등급: 85.21점 '나'등급 (전년도 '나' 등급 85.01점)

구분	총계	경영관리	경영성과
배점	100	58	42
득점	85.21	47.63	37.58

- 총점은 85.21점으로 전년도 점수(85.01점) 대비 약 0.2점 상승하여, 나등급을 달성
- 경영성과 평가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되었으며, 정량적인 부분에서 우수하게 달성하였음
- 재무관리 영역에 개선이 필요하며, 추후년도에는 정성지표에 대한 관리 및 성과달성 노력이 필요함

○ (대표이사 성과평가)

- 평가등급: 87.88점 'A'등급 (전년도 'A' 89.91점)

구분	총계	리더십	사업과제 성과	경영평가	가점
배점	100	10	20	70	3
득점	87.88	8.25	17.46	59.64	2.53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7.88점으로 A(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 평가영역별 달성도는 사업과제 성과 부문이 87%로 달성도가 가장 높고, 리더십 부문이 83%로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과제 성과 부문과 정량적 항목의 성과 집계 및 달성이 우수하여 종합적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함
- 기관(재단)의 경영평가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며, 리더십 부문의 관리가 필요함

IV 조치 사항

□ 대표이사 연봉 조정 및 성과급 지급

○ (연봉 조정률) 연봉의 7%

(단위: %)

평가등급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부진(F)
경영평가 결과	가	15	13	10	5	0
	나	10	7	5	0	0
	다	7	5	3	0	0
	라	△1	△2	△3	△4	△5
	마	△5	△6	△7	△8	△10

※ 「재단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서」【별표 6】(보령축제관광재단 연봉조정)

○ (성과급 지급률) 연봉월액의 180%

(단위: %)

평가등급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부진(F)
경영평가 결과	가	300	250	200	150	0
	나	200	180	150	100	0
	다	150	130	100	50	0
	라	100	80	50	30	0
	마	0	0	0	0	0

※ 「재단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서」【별표 7】(보령축제관광재단 성과급 지급)

□ 국장(연봉제 직원)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률) 연봉월액의 180%

(단위: %)

평가등급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부진(F)
경영평가 결과	가	300	250	200	150	0
	나	200	180	150	100	0
	다	150	130	100	50	0
	라	100	80	50	30	0
	마	0	0	0	0	0

※ 「재단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서」【별표 7】(보령축제공관재단 성과급 지급)

※ 「재단 보수규정」 제25조(연봉제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 ① 지급대상은 대표이사과 연봉제 직원이며, 그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경영평가성과급은 연봉월액에 시장이 결정한 당해 연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별표7]에서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 직원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률) 보수월액의 151~200%

(단위: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급률 결정범위	201~300	151~200	101~150	10~100	0

※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 (성과급 차등 지급)

-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

행정 사항

- (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 2025. 7. 15.(월) 限
- (재단 성과급 지급) 2025. 8월 중

참고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에 있어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⑥ 주무부서의 장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

- 제25조(연봉제 임·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① 지급대상은 대표이사와 연봉제 직원(국장)이며, 그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경영평가성과급은 연봉월액에 시장이 결정한 당해 연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별표7]에서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다.

참고2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조정 적용(예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조정 적용(예시) >

- 평가기간: 2024. 1. 1. ~ 2024. 12. 31. (1년)
- 적용시점: 2025. 6. ※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 월부터 적용

<평가결과 ‘다’ 등급, 이행실적평가 보통(B)일 경우>

- 기본연봉: 87,924,960원
- 연봉조정: 3%
- 산출내역: (기본연봉 × 연봉증감률) ÷ 남은 개월 수
(예시) (87,924,960 × 3%) ÷ 6월(7월~12월)
= 439,620원(원단위절사)씩 남은 개월 수 추가 지급

<평가결과 ‘라’ 등급, 이행실적평가 보통(B)일 경우>

- 기본연봉: 87,924,960원
- 연봉조정: △3%
- 산출내역: (기본연봉 × 연봉증감률) ÷ 남은 개월 수
(예시) (87,924,960 × 3%) ÷ 6월(7월~12월)
= 439,620원(원단위절사)씩 남은 개월 수 감액 지급